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용자 게재 정보에 이용·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표시〉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5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용자 게재 정보에 이용·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표시(안 제44조의11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나경원의원 등 34인

나. 발 의 일 : 2025. 2. 26.

다.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용자 게재 정보에 이용·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표시(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안 제44조의11 제1항 및 제2항).
- 조치의무사업자는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위한 기술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제6항).
-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우회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제7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76조 제3항).

- 안 제44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호의3)
- 안 제44조의11 제2항을 위반하여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4호의4)
- 안 제44조의11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
·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4호의5)
- 안 제44조의11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4호의6)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11(이용자의 이용·접속 장소 표시 등) ①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 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 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 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이용 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현행	개정안
	<u>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u> <u>③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u> <u>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u> <u>⑤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제4항에 따른 점검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⑦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우회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에 대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4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4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현행	개정안
4의3. · 4의4. (생략)	<u>거짓으로 제출한 자</u> 4의7. · 4의8.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5. ~ 25. (생략)	5.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2023년 10월 한 국내 포털 사이트 스포츠 응원 페이지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상대편 국가에 대한 응원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가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또한, 최근 한 국내 연구팀은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 분야와 관련된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을 게재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음¹⁾.
-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이용·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1) "中, 전기차 등 한중 경쟁분야서 조직적 댓글로 여론 조작 정황", 연합뉴스, 2024.9.29.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헌법 제21조 제1항²⁾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됨(2008헌마324등).
- 또한 헌법 제15조³⁾에 따른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96헌가18).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용자로서는 특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자로서는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을 파악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2)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본인확인조치 없이 정보 게재자의 국적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용자의 실제 국적과 이용·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우회 접속하는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표기되는 국가명을 조정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여론을 조성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의무사업자가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의 부당한 유도, 조작 등 왜곡을 억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실제 국적과 접속지 기준 국가명이 다를 수 있고, VPN 등을 통해 우회경로로 접속 시 우회접속 여부 및 실제 접속국가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국가명 표시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국가 또는

IP로부터의 게시물, 댓글 등이 일정 기준 이상 대량으로 게재되는 등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게시물 노출 중지 등 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개정안의 조치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과 정반대의 효과가 발생하고, 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접속 국가명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등 개정안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IP를 통한 이용·접속 장소의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과 허위정보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조치보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준 중 ‘이용자 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개정안의 조치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명이 표기된 댓글등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겠다는 의도인바,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이용·접속한다는 것만으로 표현의 신뢰도나 진의를 의심받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제한되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비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온라인 댓글 등에 대하여 이용·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고, 우회 접속 여부도 명기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2377호, 김기현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청원(청원번호 제2200146호,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0